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6년 집중호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영천) —

2026. 7.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물 안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가과
내 용	

1.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 인원,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그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천시 가과에서는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그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영천시 가과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022도에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2026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했지만 시행계획을 미수립 하여 관리자의 의무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 사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다.

[표 1] 영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 “생략”

2. 시설물 안전점검 미이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하 함)」 제11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별표 3에서는 안전점검의 종류에 따른 실시시기¹⁾와 점검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천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공공시

1) 붙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3 참조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1~3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4~6년마다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되며 시설물의 규모와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

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이행한 경우 시설물의 종류와 안전등급 등을 확인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그러나 영천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는 관리대상 시설물 중 일부 시설물에 대하여 매년 반기마다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아래 [표 2]와 같이 미이행하는 등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표 2] 2026년 영천시 시설물 안전점검 누락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는 주의 처분, BBB, CCC, DDD, EEE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영천시 건축공사 안전관리 등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나과, 다과
내 용

영천시 나과 및 다과에서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 중인 ‘□□□□□ □□ 환경개선사업’ 과 ‘△△△ △△△△△△△△ 신축공사’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표1] 영천시 건축공사 추진 현황 “생략”

1. 건축협의 및 허가권자 착공신고 지연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관계서류를 갖추어 해당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미리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협의)를 거친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천시 나과에서는 공용건축물의 건립공사 착수 이전에 허가권자와 건축협의를 통해 건축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 확인을 받고,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한 후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했다.

그러나 영천시 나과에서는 ‘□□□□□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위의 [표 1]과 같이 건축협의 및 허가권자 착공신고 절차를 공사 착수 전에 미리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협의 및 허가권자 착공신고를 지연함으로써 공공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관련 법령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설계용역 평가 미이행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용역 평가를 하도록 하고, 실시설계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용역비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평가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해당 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천시 나과 및 다과에서는 ‘□□□□□ □□환경개선사업’과 ‘△△△ △△△△△△△△ 신축공사’에 대하여 설계용역비가 각각 ③③③백만 원 및 ③③③백만 원으로 설계용역 평가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설계용역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설계의 품질, 공기 및 비용관리, 과업 이행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유사 공공건축물 발주 시 본 사업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품질을 개선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법」상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

3. 시설물 외관 품질 및 유지관리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물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천시 나과에서는 「□□□□□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주차장 상부 지상에 설치된 계단실 외벽 및 외장 마감재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른 시공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준공 후에도 외벽 마감상태 및 시설물 외관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백화현상, 우수 유출 흔적 등 외관상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였다.

그런데도 영천시 나과에서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계단실 외벽 콘크리트면 및 패널 접합부 주변에 백화로 보이는 흰색 얼룩과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원인을 확인하여 적절한 보수·정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외관 품질이 저하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림 1] □□□□□ □□환경개선사업 마감 현황 “생략”

그 결과 계단실 외벽 및 패널 접합부에 발생한 얼룩 등으로 외부에 노출된 시설물의 미관을 저해하고, 신축 건축물의 외관 품질 및 주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비탈면 및 공사 현장 내 안전조치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4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

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안전관리 및 공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 등에 따라 굴착부·비탈면·개구부·통행로·자재적치 구간 등에 대하여 사면보호, 배수로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천시 나과 및 다과에서는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자로 하여금 낙하물, 추락, 전도 및 토사유출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덮개, 출입통제시설, 낙하물방지시설, 비탈면 보호시설 및 방수포 등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기 설치된 방호시설과 비탈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 또는 설치 불량인 경우 즉시 보완하도록 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와 공사감독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였다.

[그림 2] 영천시 건축공사 안전관련 현황 “생략”

그런데도 영천시 나과 및 다과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위의 [그림 2]와 같이 폐자재 관리 및 맨홀 주변 임시방호조치, 차량출입구 상부 출입통제 및 자재관리, 굴착부 상부 토사·수목 정비 및 집중호우 대비 방수포 설치, 골재·공사용 자재 관리 및 주변정비 등이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저하시켜 작업자 및 현장 출입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상태를 초래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 발생 시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용역 평가 이행, 시설물 외관 품질 관리 및 현장 내 안전시설 등 정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관련자 AAA, BBB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 ☆☆☆☆☆☆☆ 확장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천시
관 계 부 서 라과
내 용

영천시 라과에서는 “☆☆☆ ☆☆☆☆ ☆☆☆ ☆☆☆☆☆☆☆ 확장공사”를 20〇〇. 〇〇. 〇〇. ♡♡♡♡♡♡♡(주) 대표자 ■■■과 계약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 현황 “생략”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 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 받은 발주청은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39조에 따

르면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 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안되며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천시 라과에서는 총공사비 5억 이상인 토목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의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구분²⁾하여 건설사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승인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 확장공사”을 추진하면서 총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초급기술인 1명 이상인 품질관리 대상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승인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2. 지장물(한전주) 이설공사비 부가가치세 과오납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① 적정-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조건부 적정-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또한,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에 의하면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영천시 라과에서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지장물(한전주 등) 이설비는 손실보상금으로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편입부지 내 한전주 이설에 따른 공사비 지급 시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사업임에도 부가가치세 ③③③원(20①①. ①①. ①①)을 과오납하였다.

그 결과, 지장물 한전주 이설에 따른 부가가치세 ③③③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어 공공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공사비 과다계상 등 공사감독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공사의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및 제138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및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지침 제118조에 따라 공사 시공 단계에서 시공자가 제출하는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사항 등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라과에서는 건설표준품셈, 각종 제시방서 및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비 산출 및 공사감독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 계상되어 있는 공정은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공사 시행 과정에 발생한 사토 운반에 대해 아래 [표 2]와 같이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업비 ○○○원을 설계변경으로 감액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 사토 운반거리 미정산 현황 “생략”

그 결과 공사원가 등이 과다 계상되거나 불필요한 공사금액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4. 공사현장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장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감독자는 공사시행 단계에서 시공확인, 품질관리계획 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에 대한 업무가 성실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 또는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영천시 라과에서는 도로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현장 시공확인, 안전관리, 환경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미비하거나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적절한 지시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부서에서는 “☆☆☆ ☆☆☆☆ ☆☆☆ ☆☆☆☆☆☆☆ 확장공사”을 추진하면서 현지 확인 결과 아래 [그림]과 같이 호안블록 시공시 속채움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수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저수지 주변 및 도로 진·출입로 등 추락 위험지역에 가드레일을 제거하고 시공중 임에도 안전시설(웬스, 윙카 등)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등의 추락으로 인명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공사현장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림] 현장 지적사항 현황 “생략”

조치할 사항 영천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승인하고,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

◎원 에 대하여 회수, 과다 계상된 사업비 ◎◎◎원 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라 감액, 현장 내 미흡하게 시공된 공종 및 안전시설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관련자 AAA는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